瑞山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改正條例案
審 査 報 告 書

1. 審査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8. 12. 17

나. 提 出 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1998. 12. 18

라. 上程日字 : 1998. 12. 21

2. 提案說明要指(提案說明: 自治行政課長 方景泰)

가. 提案理由

○ 개정된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

○ 자치단체간의 관련조례를 표준화하여 자치단체간의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임.

나. 主要骨子

○ 본청, 의회사무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·동별로 되어 있던 정원을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.면.동을 통합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하고,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별도로 두어 크게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별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○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모델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간의 관련 조례를 표준화하여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,

○ 포괄적인 정원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인력운용에 있어 탄력적 대처가 용이하여 행정능률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: 생 략

5. 討　　論 : 없었음.

6. 少數意見 : 없었음.

7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7 호
의 결 년 월 일	1998. 12. 24. (제 36 회)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8. 12. 17.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

재출년월일 : 1998. 12. 17.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□ 개정이유

○ 개정된 관련 법령과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며

○ 정부의 조례·규칙 표준모델 지침에 따라 관련조례를 획일화하여 자치단체간의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임.

□ 주요골자

○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·동을 집행기관으로 통합하여 정원의 정수를 크게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별하였음(안제2조).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제2항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

○ 정 원 ┌ 집 행 부 : 881명(본청386, 직속기관133, 사업소60, 읍·면·동302)
　　　 └ 의회사무국 : 16명

서산시조례 제 호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97명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881명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6명

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) 본청, 의회사무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·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정원감축에 따른 경과 조치)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초과 인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